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

(이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-124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8 . .

발 의 자 : 이민석, 강명숙, 권영숙,  
김기석, 김성희, 김영미,  
김진천, 서종수, 정혜경,  
최은하

## 1. 제안이유

최근 저출산·고령화,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~안 제5조)
- 다.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
- 라.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·운영(안 제7조~안 제8조)
- 마. 사무의 위탁(안 제9조)

## 3. 관계법령

「건강가정기본법」

## 4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20. 8. 28. ~ 2020. 9. 1.

나. 붙임: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“1인가구”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- 2.“1인가구 정책”이란 1인가구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, 권익 증진,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
- 3.“사회적 가족”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·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.
- 4.“사회적 가족도시”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)**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
3.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4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
5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**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실태조사)**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지원 사업)**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돌봄서비스,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

2.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

3. 문화·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·여가 생활 지원 사업

4.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,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8조(지원 시설 설치·운영)**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“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”에서 1인가구 지원 사

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(사무의 위탁)**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2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
3.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·운영
4.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제6조 실태조사
- 나. 제7조 지원사업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## 3. 미첨부 사유 :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김려진
연 락 처	02-3153-8932